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청은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45일)됨에 따라 사후 적용 심사기준에 반영, 인도네시아/이스라엘 FTA협정 발효에 대비한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 C/O 정정발급 신청 시 C/O 사본 제출 허용,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 관세 적용 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BOM 표준서식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21.7.19.(월)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개정사유

#### 1. FTA관세법 개정 및 발효 예정인 FTA 협정 반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함)의 개정 내용 반영
- 발효 예정인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

#### 2.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 II. 주요 개정내용

#### 1. FTA관세법 개정사항, 신규협정 등 반영

- (제19조)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의 연장(45일)
- (제28조, 34조, 35조 및 별표3)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FTA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
- (제35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 제출하도록 개선
- (제47조 내지 52조 및 55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 부서 등 변경 사항 반영

## 2. 기업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증명 및 협정관세 적용 제도 개선

- (제20조)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수입자의 오류 보완 기회 확대)
- (제27조 및 별지 제19호 서식)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부담 완화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방지를 위해 자재명세서(BOM) 표준서식 마련
- (제30조)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현지확인대상 해제
- (제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도 발급신청 취하 허용

## 3.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제2조 및 제21조) FTA포털 및 인터넷 통관포털 웹사이트 주소 현행화
  - 관세청 FTA포털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전자통관시스템 (<http://unipass.customs.go.kr>)
  - 원산지증명센터 (<http://cert.korcham.net>)
- (제3조, 16조, 21조, 22조 등) 인용조문 오류 등 정비

## | 의견제출

동 개정(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1.7.19.(월)까지 관세사회 이메일 [cereal@kcba.or.kr](mailto:cereal@kcba.or.kr)로 제출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_행정예고
- [붙임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대조표\_행정예고
- [붙임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전문\_행정예고
- [붙임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견 제출 양식

## |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mailto:jycha@esein.co.kr)



민경호 관세사

T 02-6011-3106  
E [khmin1@esein.co.kr](mailto:khmi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